

02 해양·환경 분야

1.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신규)
2. 영세어업인 선외기 지원사업(신규)
3.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5.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신규)
6.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신규)
7.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신규)
8.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9.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신규)
10.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신규)
11. 자동차 소음 개선 관리·감독 강화
12.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13. 위생용품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운영 알림(신규)

해양·환경 분야



1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신고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어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계도기간 ('23. 1. 12. ~ '24. 1. 11.)

새롭게 시작합니다

- 제도취지 :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보호 위해 어구 **관리제도** 도입
- 신고대상 : ① **(생산업자)**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 및 무상 유통·공급하는 자
② **(판매업자)** 어구를 생산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의무사항 : 신고자는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 (전자기록 포함)하고 이를 3년간 보존
※ 미신고 및 미기록자 과태료 200만원 이하 및 행정처분(3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 방문 신고 : 진도군청(주(主) 사업장 시청·군청·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고 : 정부24(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고 사항 중에 변경 또는 폐업하였을 때는 며칠이내 신고 해야 하나요?
- 30일 이내 진도군청 수산지원과(해당 시·군·구 해양수산 관련 부서)로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7

해양·환경 분야



2 영세어업인 선외기 지원사업

영세 및 청년어가 등 경영 및 어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외기 엔진을 교체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영세어업인 지원을 통한 어촌정착 및 어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허가어업 및 양식업 종사 어업인 대상 선외기 엔진 교체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선외기"란 무엇인가요?
 -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 기관으로서 간단한 조작으로 선박의 선체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영세어업인이 소유한 소규모 어선의 노후된 선외기 엔진의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엔진만 지원하며 기타 부속품은 제외입니다.
 - * 지원율 : 군비 50%, 자부담 50% / 구입단가 : 20,000천원/대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에 따른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및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에 따른 양식업권을 소유하거나 행사계약하고 있는 어업인 중 2.5톤 이하의 어선 1척을 소유한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및 읍·면 수산업무 담당팀에 사업신청 후 선정된 어업인이 선외기 엔진 교체 설치 후 서류 제출 시 지급됩니다.

문의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 ☎061-540-3557

해양·환경 분야

3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미래 세대와 함께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증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장, 어장 등에 사용하는 부표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시행일 2023년 11월 13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언제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인가요?**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2023년 11월 13일부터 금지됩니다.
- 신규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양식장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어장부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발포 부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 (비발포부표)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하거나 피복된 제품
 - (기 타) 인증 부표로 인증받은 부표
- 정부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증부표 교체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입비의 70%를 지원하며, 진도군 수산지원과 및 읍·면 수산업무 담당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2

해양·환경 분야

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개선, 고손해율자 제한 기준 삭제, 시설물 보장상품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보험료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8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율 구간에 대한 세분화 8구간 → 13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보험가입금액 제한기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고손해율자의 가입금액은 보유가액 90%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고손해율자 대상 90%제한 기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보장상품 확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보장상품 1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보장상품 15종 → 18종 (확대) 뱀장어, 전복종자 (신설) 넙치종자

시행일 2023년 8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개선, 양식보험 가입금액 제한기준 삭제, 시설물 보장상품이 확대·신설되었습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재해보험료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8구간 → 13구간으로 세분화, 고손해율자 대상으로 양식 보험 가입금액 90% 제한 기준 삭제, 시설물 보장 상품이 15종 → 18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인 : 보험 가입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신청장소 : 수협
 - 구비서류 : 양식관련 면허, 허가, 입식증빙자료(입식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 수산지원과 양식산업팀 ☎061-540-3573

해양·환경 분야

신규

5 낚시어선 승선단말기 지원

낚시어선 승·하선 신고 편의성과 사고 시 승선원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낚시 어선에 지문인식 단말기 설치비를 60%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낚시어선 승·하선 신고 편의 및 유사시 신속한 신원 파악
- 핵심내용 : 간편한 승·하선 및 출·입항신고를 위해 지문인식 단말기 설치 지원
 ※ 선주 및 승객의 호응도가 높고, 해경·해수부 연동으로 유사시 신속 대응 가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낚시어선 승·하선 및 출입항 신고 편리를 위한 지문인식 단말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구입단가 : 약 100만원/대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어업인
-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및 읍·면 수산업무 담당팀에 사업신청 후 선정 된 낚시어선업 어업인이 설치 후 서류 제출시 지급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승선자 명부 수기 작성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부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등 문제점을 보완 하고 지문인식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편리한 승선신고 및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 가능
 - 낚시어선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으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로 이용료 납부가 편리해집니다. ※ 「소득세법」개정, 시행('24.1.1.)

문의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 ☎061-540-3576

해양·환경 분야


 신규

6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

단순 가공 수산식품 기업을 간편식, 즉석 식품 제조 등
고부가가치 가공수산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판촉 등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도내 영세 수산가공식품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단순 중간가공(B2B) 위주의 수산식품업체를 고부가가치가 있는 간편식, 즉석식품 제조업체(B2C)로 전환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도내 중소 수산가공식품 업체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수산가공식품업체의 간편식·즉석식품 개발, 온라인 몰 등에 입점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 전문 업체 컨설팅, 판촉 등을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산가공식품을 신규 개발하는 수산식품 기업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체적인 사업 계획 미확정으로, 확정 후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및 읍·면 수산업무 담당팀에 문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수산지원과 수산물가공팀(☎061-540-3582)

해양·환경 분야



7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조절로 안정된 유통망 구축 및 가격 안정성 확보,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한 제반시설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된 유통망 구축 및 가격 안정성 확보, 원활한 생산·유통 지원
- 사업내용 :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100평 이상)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안정된 유통망 구축을 위한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100평 이상)을 지원하며, 신축 및 개·보수 모두 가능합니다.
 - * 지원율 :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 / 한도액 : 개소당 1,000백만원 이내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생산자단체, 수협 등이며,
 -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조합원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어야 하며,
 - 비법인이 어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 기간과 법인 설립 후의 기간을 합산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및 읍·면 수산업무 담당팀에 사업신청 후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서류 제출 시 지급됩니다.

문의 수산지원과 수산물가공팀(☎061-540-3582)

해양·환경 분야

8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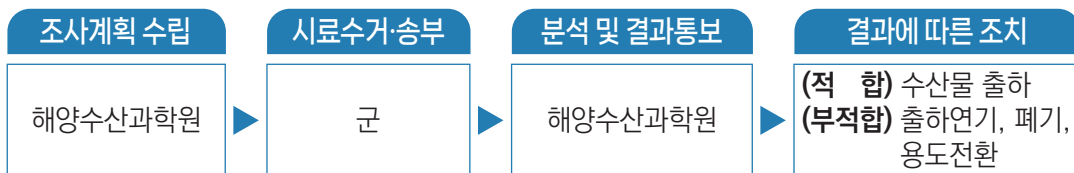
수산물 안전성조사 목표 품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사항목은 93종에서 184종으로 분석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증 전	변 경
수산물 안전성조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량 : 1,250건 • 품 종 : 72품종 • 항 목 : 93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량 : 1,300건 • 품 종 : 전품종 • 항 목 : 184항목
수산물 PLS 제도 전면시행 (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기준 순차적용 ① CODEX 기준 ② 유사 어종 최저기준 ③ 항균제 일률적용(0.01mg/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기준(0.01mg/kg) 적용 (‘어류’만 해당,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는 불검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수산물 안전성조사 'PLS(잔류물질 허용목록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어류'의 동물용의약품에 동일한 기준을(0.01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성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방사능(2종), 중금속(3종), 동물용의약품 등(177종), 식중독균(2종)의 유해물질을 정밀분석 후 법령에 정해진 기준·규격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으로 도내 수산물 신뢰도 제고 및 건강한 먹거리 소비
- 어떤절차로 진행되나요?



문의 수산지원과 수산물가공팀(☎061-540-3583)

해양·환경 분야

신규

9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도서 지역이라 육지와 다르게 추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도서지역 주민 및 사업체의 추가 부담 택배비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 핵심내용 : 섬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개인·법인사업체의 생활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서지역 추가 택배비용의 일부 지원
 - ※ 지원대상자 : 여객선 및 화물선 입출항 가능한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된 개인

시행일 2023년 8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자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기 간) 지자체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연중지원
 - (지원액)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지원
 - ※ 추가배송비 표기된 증빙자료 제출 시(송장 번호 1건당) 실비 전액 지원
 - 추가배송비 표기되지 않은 증빙자료 제출 시(송장 번호 1건당) 3천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 진도군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택배 증빙자료, 신분증·통장 사본

문의 해양항만과 해양정책팀 ☎061-540-6454

해양·환경 분야

신규

10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어업인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시간대 어업 활동 편의를 위하여 어항에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취지 :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어업활동 공간 확보
- 핵심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능률 향상을 위해 어항에 조명타워, 차량 추락 방지 시설,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이력, 안전시설 현황, 시급성 등을 종합적 판단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항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합니다. *6개소(별포, 용호, 굴포, 관호, 창유, 성등포)
- 지원내용(사업)은 무엇인가요?
- 가로등(조명타워), CCTV,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어항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을 추진합니다.



조명타워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볼라드)

•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 지방어항 안전시설 수요조사(읍면 신청) 결과 사고이력, 어항 안전시설 현황, 이용 빈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결정 후 추진합니다.

문의 해양항만과 어촌어항팀 ☎061-540-6460

해양·환경 분야

11 자동차 소음 개선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의 소음관리 수시점검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배기 소음을 줄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증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차 수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운행차 수시 점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운행차 수시 점검 의무화
		시행일 2024년 7월 1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운행차 점검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 **점검사항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부적합 시 어떻게 되나요?**
 - 수시점검 결과 위반차량 운행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게 되며, 위반차량 운행자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정비·점검확인서)하게 되어있습니다.
 - 개선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및 사용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환경수질과 환경정책팀 ☎061-540-3705

해양·환경 분야

12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이 새로이 추가·확대되어 식품접객업 등의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령 개정 시행('22.11.24.) → 1년 계도기간 종료('23.11.23.)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컵, 나무젓가락 등 18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빨대*, 우산비닐 추가 20개 품목으로 확대 *플라스틱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점,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점,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행일 2023년 11월 24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요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은

- ① 플라스틱 빨대·젓가락 사용 금지(플라스틱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 ②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음식점·주점업에 한함)
- ③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제과점업에 한함)

• 대규모 점포(3,000㎡이상)에서는 우산비닐 사용 금지

• 체육시설은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 금지

•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 (종전)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등 18개 적용품목 등은 계속해서 사용제한

문의 환경수질과 환경관리팀 ☎061-540-3724

해양·환경 분야

신규

13 위생용품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운영 알림

위생용품 회수제도 도입(개정: '23.3.28., 시행: '24.3.29.)에 따라 부적합 위생용품 등의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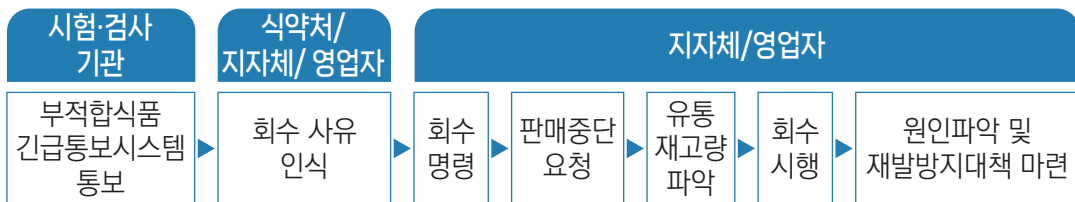
새롭게 시작합니다

- 핵심내용
 -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한 위생용품 분야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군민들이 받는 혜택
 - 위해 위생용품을 보다 신속하게 판매중지 및 회수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고 위생 용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의 위생용품 검사 관련 기관 등에서 파악된 부적합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 위해 상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누가 긴급통보를 실시하나요?
 - 식약처(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위생부서 등에서 실시하며, 자가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영업자도 검사 결과가 부적합임을 확인하였을 때 지체없이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적합 위생용품의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사 결과 기준규격 부적합 혹은 위해 성분 검출 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문의 | 관광과 위생팀 (☎061-540-3412)